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52

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 : 권인숙・임오경・남인순

유정주 • 윤미향 • 윤후덕

장혜영 · 정춘숙 · 이수진

아쥬(비) · 최혜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·모가 양육부·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 년 6월 기준으로 36.9%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,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 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,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 ·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국금지, 명단공개 도입, 형사처벌을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(안 제21조의4, 제21

조의5, 제27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3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,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 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 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④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,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직접 여성가족부

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5(명단공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인적사항과 채무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. 다만,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제2항 중 "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2.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7조제 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 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4(출국금지 요청 등) ①
	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
	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
	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
	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
	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
	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
	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
	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
	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
	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
	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가
	생업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않
	으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는
	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
	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	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
	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
	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
	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
	채무의 이행, 양육비 채무자 재

<신 설>

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 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 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,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직접여성가족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 정 및 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5(명단공개)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 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 1호·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 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 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 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

제27조(벌칙) ① (생 략)

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 해당하는-----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.

<신 설>

- 그 인적사항과 채무액 등을 공 개할 수 있다.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 단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대 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통 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채 무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명단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 -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<u><신 설></u>	2.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
	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
	누설한 사람